

#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인증기관 규정

## 제 1장 총칙

### 제 1조 목적

본 규정은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인증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조 역할

1.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의 자격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회 회원에게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데 힘쓴다.
2.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양측 기관의 질적 발전을 추구한다.

## 제 2장 인증기관 관련 사항

### 제 3조 신청 조건

1. 인증기관의 대표자는 본 학회의 예술심리상담전문가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.
2. 인증기관에서 수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강사는 본 학회 예술심리상담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이어야 한다.

### 제 4조 인증기관 신청

1. 신청은 수시로 한다.
2. 인증기관 신청 및 재인증시 제출 서류
  - 1) 인증기관 신청서 1부(양식1 참조)
  - 2) 대표자의 자격증 사본 각 1부
  - 3) 인증기관 심사자료(구성원 이력사항, 치료실 내·외부 사진) 각1부
  - 4) 신청비(10만원)
3. 연수시간 인정 관련
  - 1) 연수 프로그램 개최 최소1개월 전에 학회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한다(양식2 참조 - 기관명, 연수세부일정, 연수시간, 강좌명, 강사명, 강사의 자격사항 등).
  - 2)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참가자 명단(성명, 주민번호 기재 필수, 양식 3참조)과 출석부 사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.

- 3) 인증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이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이수증은 학회에서 발급한다(이수증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 부과됨).
  - 4) 연수 프로그램이 일정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수로 인정하지 않는다.
  - 5) 1회의 연수 프로그램이 최대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연수에 한하여 수련감독예술심리상담전문가는 60시간, 예술심리상담전문가는 30시간, 예술심리상담사 1급은 15시간 까지 연수 시간으로 인정된다(단,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).
4. 인증기관의 정지
- 1) 대표자가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
  - 2) 인증기관에서 본 학회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
  - 3) 실제 연수내용과 다른 사항의 내용으로 허위 보고하여 이수증을 신청하는 경우
  - 4) 예술심리상담사로서의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
  - 5) 2년 이내에 연수 및 임상실습을 1회도 하지 않은 경우
  - 6) 기관 연회비(10만원)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
## - 부 칙 -

1. 본 규정은 본 학회가 2010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.
2.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인증기관 신청서

기관명		구분	연수( ) 실습( ) ※해당란에 모두 표기
기관주소	(우편번호: )		
대표자 성명	대표자 연락처	대표자 e-mail	
기관 연락처	기관 Fax	홈페이지 /카페	
담당자	담당자 휴대폰	담당자 e-mail	
대표자 및 구성원	성명	직책	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자격증 및 자격번호
기타 특이 사항			

본 기관( )은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인증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, 학회 회원들에게 양질의 연수 및 임상실습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상호 협력할 것입니다. 이에 인증기관 자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년 월 일

대표자 (인)

**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장 귀하**